

법장 육상원융설의 새로운 이해

박보람

충북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boram@cbnu.ac.kr

I. 서론

II. 육상설의 내적 구조

III. 육상설의 목적과 적용 대상

IV. 결론

요약문

법장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에서 육상원융의를 제창한 이래 육상설은 화엄종에서 일승연기의 무진원융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한 교리적 방편이 되었고 이 때의 육상설은 대부분 법장의 육상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처럼 화엄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장의 육상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장의 육상설 성립에 기반이 된 그 이전의 육상설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육상설 각 항목의 내적 구조와 목적, 그리고 적용 범주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세친의 『십지경론』에서 지엄, 의상에 이르기까지의 육상설을 개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장의 육상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법장의 육상설은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 육상설의 목적이 경전 해석 방법으로 대표된다면 법장 육상설은 일승연기의 무진원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세친이 육상설의 적용 범주에서 사법을 제외한 것을 지론종의 정영사혜원은 제한적인 조건을 걸고 사법의 체의(體義)에 의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장은 전면적인, 무제한적인 육상설의 사법 적용을 주장한다. 셋째, 육상설을 전면적으로 사법에 적용하기 위

해서 법장은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사법인 집 자체를 총상에, 집을 구성하는 요소를 별상에 배대하는 변화된 총별 구조를 논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 법장의 육상설은 검토 결과 지엄보다는 의상의 육상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엄까지는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에 포함되고 의상과 법장부터는 새로운 육상설의 흐름이 시작되어 이것이 그 이후 화엄종의 육상설을 대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의 육상설과 비교할 때 차이점도 가진다. 즉 총별·동이·성괴의 원용의가 의상에게는 아직 부각되지 않지만 법장에게서는 예를 들어 별상인 서까래가 곧 총상인 집이며 또 서까래여야만 곧 집이라는 원용의가 극도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상과는 또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법장, 지엄, 의상, 육상, 육상원용의, 세친, 『십지경론』

I. 서론

육상설(六相說)은 『십지경(十地經)』에 보살행의 방편으로서 그 명목이 보이고 세친(世親)의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 이를 경전 해석의 한 방법으로 이론화한 이래 지론종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친 후 화엄종에 이르러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주요한 방편으로서 자리잡았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육상설은 목적, 구조, 적용 대상, 의미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거의 모든 단계마다 계속해서 변용의 층을 하나하나 쌓아간 두터운 퇴적물이다.¹⁾ 표층의 흙과 심층의 암반이 같으면서 다르고 또 그 둘 사이에 간단치 않은 사연을 감추고 있듯이 각 단계의 육상설은 같으면서 다른 듯 저마다의 인연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여러 육상설을 모두 동일한 법으로서 파악하거나 서로 관계없는 고립된

1) 육상설 일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 육상설의 변천에 초점을 맞춘 최근 연구로는 박보람, 「원효와 의상의 만남과 헤어짐 - 육상설(六相說)을 중심으로」, 『불교철학』 제5호(서울: 세계불교학연구소, 2019.12.)를 참조.

설로서 이해한다면 이는 곧 단상(斷常)의 견해에 다름 아닐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육상설이야말로 총별동이성괴의 육상설로 살펴봐야 할 연기법 그 자체이다.

화엄종의 대성자(大成者)라 불리는 법장(法藏, 643~712)의 육상설도 마찬가지이다. 법장이 이른바 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를 주창한 이래 그의 육상설은 화엄종의 육상설을 대표하게 되며 그 이후의 육상설 논의는 대부분 법장의 육상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근·현대에 이르러 지금까지도 화엄종의 육상설을 소개하는 경우에 으레 법장의 육상설을 표준으로 사용한다.²⁾ 그러나 이 때, 육상 항목의 경증과 육상설의 사법 제외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법장의 육상설이 그 이전의 육상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이전의 육상설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등의 사상사적 고찰은 아직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³⁾

이에 이 글에서는 법장의 육상원융설이 세친(世親), 지론종(地論宗), 지엄(智儼, 602~668), 원효(元曉, 617~686), 의상(義相, 625~702) 등 법장 이전의 다양한 육상설과 어떤 사상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장의 육상설, 나아가 육상설 전체의 육상원융적 이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육상설 관련 논의의 여러 측면 가운데 이 글은 특히 육상설의 내적 구조와 목적과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장 육상설의 이 세 항목을 그 이전의 육상설과 비교함으로써 육상설의 사상사적 흐름 중 각 단계별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이 셋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다른 항목에도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육상원융적 관계임은 물론이다.

2) 金苧石, 『華嚴學概論』(서울: 법륜사, 1986), 第四編 教理論 第六章 第三節 六相圓融論; 해주, 『화엄의 세계』(서울: 민족사, 2000), 제26강~제28강; 본각, 『화엄교학 강론』(서울: 뜨란, 2018) 제5장 제1절 육상원융의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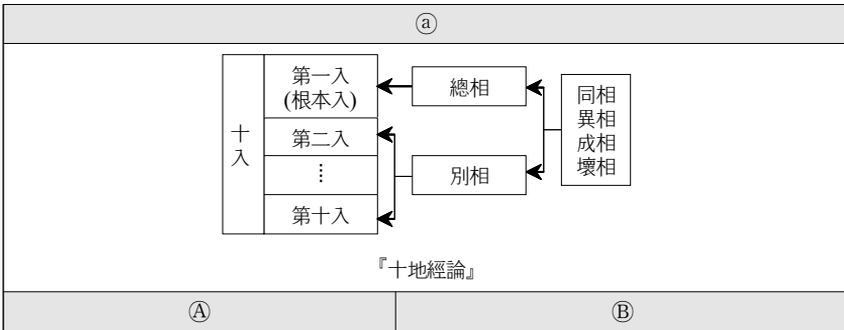
3) 오다 겐유(織田顯祐), 『『십지경론(十地經論)』의 육상설(六相說)과 지엄(智儼)의 연기사상-지론(地論)에서 화엄(華嚴)으로-』,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는 거의 유일하게 『십지경론』부터 법장까지의 육상설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이 글의 주제인 법장 육상설의 구조, 목적 등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연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이 의견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밝히고자 한다.

II. 육상설의 내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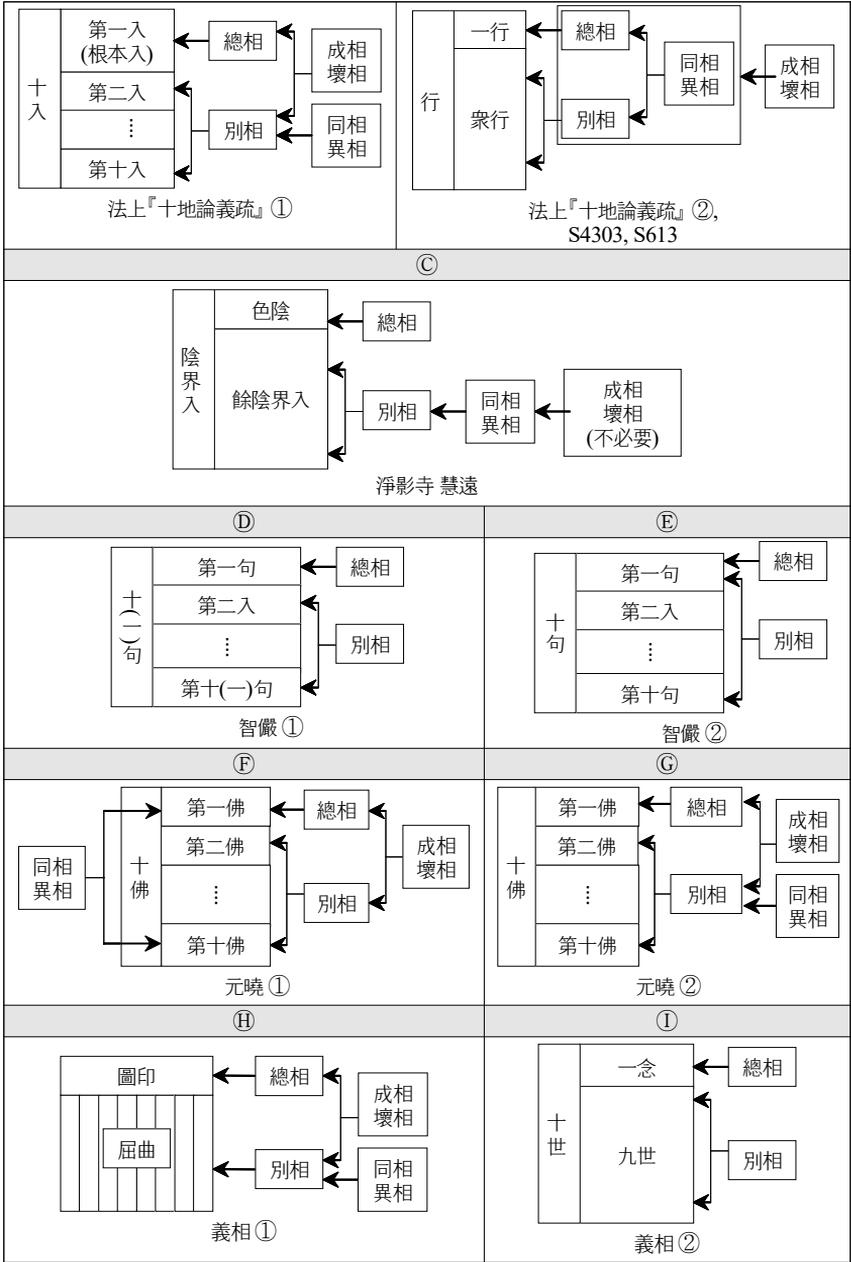
1. 법장 이전의 구조

육상설의 내적 구조란 육상, 즉 총상·별상·동상·이상·성상·괴상의 여섯 항목이 내부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에 의해 육상설이 성립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구조는 육상설이 성립하는 근본이지만 세친이 처음으로 그 구조를 주장한 이래 동아시아에서는 세친의 구조가 여러 차례 변용되며 이로 인해 육상설 자체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원인이 된다.

법장 육상설의 구조 또한 세친 이래 누적되어 온 변화의 흐름 중 한 단면이다. 그러므로 법장 육상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진행된 육상설 구조의 변화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십지경론』, 지론중, 지엄, 의상과 원효에게서 육상설의 내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선행 연구의 관련 내용을 요약·인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⁴⁾



4) 아래 그림은 박보람, 「육상설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 『십지경』부터 지론종까지를 대상으로, 『불교학연구』 47집(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과 박보람, 앞의 논문 「원효와 의상의 만남과 헤어짐 - 육상설(六相說)을 중심으로」의 두 연구에서 내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 도표에서 원효의 육상설 구조를 의상보다 위에 배치한 것은 그 둘의 육상설 성립의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생몰 연대의 선후를 따른 것일 뿐이다.



<도표 1> 육상설 내적 구조의 변화(『十地經論』~元曉, 義相)

위 도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육상설을 개창한 세친의 『십지경론』에서 육상설(㉑)은 경전에 설해지는 10구의 해석 방법으로서 제1구는 총상, 제2구~제10구는 별상이고 동상·이상·성상·괴상은 총상과 별상을 설명한 것이다.

『십지경론』이 한역된 후 지론종이 성립되면서 이 구조에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 법상(法上, 495~580)의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와 S4303, S613 등 (㉒)에서 총별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동상과 이상이 총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별상의 아홉 구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성상과 괴상은 『십지경론』과 동일한 경우와 총별동이에 대한 성괴인 경우의 두 가지로 분화한다.

지론종의 말기에 해당하는 정영사 혜원(淨影寺慧遠, 523~592)의 육상설(㉓)은 총별의 구조가 『십지경론』의 것을 따르지만 동상과 이상이 별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 지론종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상과 괴상이 동상과 이상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성상과 괴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은 이전 지론종과 다른 부분이다.

지엄의 경우 육상설을 중시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존하는 저술에는 육상설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지엄 저술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 육상설은 총별의 구조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㉔)는 『십지경론』 이래 지론종에서도 유지된 총별의 구조이고 두 번째(㉕)는 경전의 10구 중 제1구가 총상과 별상을 겸하며 제2구~제10구가 별상에 배대되는 구조로서 이는 지엄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지엄 특유의 총별 구조이다.

법장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효의 육상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㉖)는 지론종 ㉑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이다. 두 번째는 총별성괴의 경우 『십지경론』과 지론종 ㉑의 해석과 동일하지만 동상과 이상의 경우 『십지경론』(㉑)처럼 총별의 동이나 지론종 ㉑와 혜원처럼 별상 내의 동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10구 전체에 대한 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원효만의 독특한 해석이다.

여기까지의 육상설 구조의 변천을 정리하면 『십지경론』에서 처음 설정된

총별동이성괴의 구조 가운데 동이는 처음의 총별 간 동이에서 별상 내 동이로 변형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변형된 동이가 주를 이룬다. 성괴의 경우는 총별에 대한 성괴, 총별동이에 대한 성괴, 동이에 대한 성괴 등 다양한 변용을 이루지만 대체적으로 『십지경론』과 같은 총별에 대한 성괴가 대세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총별의 관계는 이러한 격변의 흐름에서 벗어나 『십지경론』 본래의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소개할 의상의 육상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법장의 사형인 의상의 경우,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총별 구조의 변화이다. 의상의 스승인 지엄을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는 경전에서 설해지는 10구 가운데 제1구가 총상, 제2구~제10구가 별상이었지만 의상은 그 전체 집단, 즉 10구 자체를 총상으로 보고 10구 각각을 별상으로 규정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총별간의 호환성을 주장하거나 체의 뜻에 의거할 경우 경전 10구가 아닌 현상[事法], 즉 음계입(陰界入) 중 하나, 예를 들면 색음(色陰)이 총상이고 다른 나머지 음계입이 별상인 경우는 있었지만 의상처럼 경전 10구 또는 음계입 전체를 총상으로 보고 그것에 속해 있는 개별 항목을 별상으로 보는 경우는 없었다.⁵⁾ 그러나 의상에게는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 또한 보인다. 이러한 전통적인 총별 구조의 적용은 특히 10세를 논하는 곳에 한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 외 동이성괴의 경우는 지론종 일반의 구조, 즉 별상 내 동이와 총별에 대한 성괴의 구조를 주장한다.

2. 법장의 육상설 구조

법장은 그의 초기 대표 저술인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 중 「의리분제장(義理分齊章)」에서 일승의 의리를 나타내는 네 가지 교설 가운데 하나로 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를 설정할 정도로 육상설을 중시하였으며⁶⁾

5) 이것은 육상의 목적,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자세히는 후술한다.

6) 법장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의리분제장」에서 전체를 통틀어 육상설을 중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그의 후기 저술인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등에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그의 옥상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화엄 저술 전체를 시야에 두고서 접근해야만 하며 법장 옥상설의 내적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법장의 화엄 저술 가운데 옥상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한다.

① 총상은 하나가 많은 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별상은 많은 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별상이 총에 의지하여 저 총을 만족시키는 까닭이다. 동상은 많은 뜻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 같이 하나의 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상은 많은 뜻이 서로 바라보니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성상은 여러 뜻을 말미암아 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괴상은 여러 뜻이 각각 자신의 법에 머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⁷⁾

② 다섯 번째, 옥상을 밝힌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금 [하나의] 티끌이 이사(理事)·해행(解行)·교의(教義) [등]으로써 연기를 이루니 이것이 총[상]이다. 티끌을 말미암아 총[상]의 뜻이 현전하여야만 티끌의 처소에서 체용(體用)·해행(解行)·교의(教義) [등]을 변별하여 각각 차별되니 이것이 별[상]이다. 이 하나의 티끌의 처소에서 모든 뜻을 변별하지만 각각 [자]성이 없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이것이 동[상]이다. 이 하나의 티끌의 처소에서 모든 뜻, [예를 들어] 체용·성상(性相) [등]이 각각 차별되니 이것이 이[상]이다. 이 하나의 티끌의 처소에서 모든 뜻이 현전해야 티끌의 법이 비로소 성립하니 이것이 성[상]이다. 이 하나의 티끌의 처소에서 모든 뜻이 각각 자신의 성상 등을 나타내어 끝내 서로 이루어 서로 짓지 않으니 이것이 괴[상]이다.⁸⁾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96), pp.301-302 참조.

- 7)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45, p.507下6-10), “總相者, 一含*多德故. 別相者, 多德非一故. 別依*止總, 滿彼總故. 同相者, 多義不相違, 同成一總故. 異相者, 多義相望, 各各異故. 成相者, 由此諸義*, 緣起成故. 壞相者, 諸義各住自法, 不移動故.” 『大正藏』의 교감 정보에 의거하여 문맥 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한문 원문을 수정하고 이를 *로만 표시하고 해당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이하 동일.
- 8) 法藏,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45, p.632中20-27), “五顯六相者. 今塵全以理事解行教義以成緣起, 此爲總也. 由塵總義現前, 方於塵處, 辨體用解行教義, 各各差別, 是別也. 此一塵處所, 辨諸義, 各各無性, 互不相違, 是同也. 此一塵處, 諸義體用性相, 各各差別, 是異也. 此一塵處, 諸義現前, 塵法方立, 是成也. 此一塵處,

③ 이상의 열 가지 뜻은 장애 없이 상즉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자]좌는 총상이다. [이 사자좌가 갖춘] 열 가지 뜻은 별상이다. [열 가지 뜻이] 가지런히 [사자]좌의 뜻인 것은 동상이다. 열 가지 뜻이 섞이지 않는 것은 이상이다. 이 열 가지 뜻을 말미암아 [사자]좌의 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상이다. [열 가지 뜻이] 각각 자신의 법에 머무는 것은 괴상이다.⁹⁾

①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의리분제장」 중 육상원용의 가운데 육상 각 항목을 정의하는 약석(略釋) 부분이다. ②는 법장 만년의 저술로 생각되는 『화엄경의해백문(華嚴經義海百門)』 중 육상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③은 또다른 만년의 저술인 『화엄경탐현기』 중 육상 관련 일부분이다.

이 인용문들을 통해 육상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총상은 논의 대상의 전체를 가리키고 별상은 그 전체에 속하는 개별 항목을 가리킨다. 즉 ①에서는 하나[-]가 총상이고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덕 또는 뜻[多德, 多義]이 별상이다. ②의 경우 한 티끌이 총상이고 그 티끌에 포섭되는 모든 뜻[諸義]이 별상이다. ③은 사자좌가 총상이고 그 사자좌가 갖춘 열 가지 뜻[十義]이 별상이다. 이것을 이전 육상설의 설명 대상인 경전 10구로 다시 풀이한다면 십불(+佛)이든, 십입(+入)이든 그 전체가 총상이고 제1불, 제2불, 제10불 또는 제1입, 제3입, 제9입은 모두 별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법장의 사형인 의상의 총별 구조(㉑)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의상의 총별 구조가 그의 스승인 지엄의 총별 구조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어떤 육상설에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구조임을 고려할 때 법장의 총별 구조는 의상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의상의 총별 구조는 의상이 당 유학 시기에 저술한 『일승법계도』에 이미 나타나므로 법장은 의상이 새롭게 해석한 총별 구조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¹⁰⁾ 법장은 의상이 『일승법

諸義各各顯自性相，終不相成相作，是壞也。一切諸法，皆具此六相，緣起方成。若不如是，則失六義也。”

9)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35, p.130上19-22), “此上十義, 無礙相即。謂一座是總相。十義是別相。齊是座義是同相。十義不雜是異相。由此十義令座法起是成相。各任自法是壞相。”

10) 법장이 의상의 『일승법계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는 연구로는 金天鶴, 『平安期華嚴思想の研究—東アジア華嚴思想の視座より—』(東京: 山喜房佛書林, 2017), pp.212-213 등을 참조.

계도』에서 도인(=총상)과 곡각들(=별상)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 총별 구조를 계승하여 『화엄일승교의분제장』에서 그 유명한 집[숨]의 예를 통해 집(=총상)과 집을 이루는 연들, 예를 들면 서까래[椽](=별상)로 총별을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법장의 총별에 대한 논의 가운데는 위와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구절도 있다.

④ 10세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3세에 각각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어서 곧 9세가 된다. 그런데 이 9세가 번갈아 상즉 상입하기 때문에 하나의 총[상]구를 이룬다. 총별을 10세를 합하여 이룬다. 이 10세는 개별적으로 다름을 구축해서 동시에 현현하여 연기를 이루기 때문에 [상]즉 [상]입을 얻는다.¹¹⁾

⑤ [10불 가운데 제 1불]의 ‘세간에 안주한다.’는 것은 열반에 집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세간에 집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착불’이라고 이름한다.……이것이 총[상]구이고 아래의 아홉 [불]은 별[상]을 나타낸다.……여기에서 10불은 육상의 총별 등으로 이에 준거하라.¹²⁾

④는 10세를, ⑤는 10불을 총별로써 설명하는 부분이다. 두 인용문을 보면 『십지경론』 이래 전통적인 총별 구조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구조를 보면 10불 중에서 제1불인 무착불을 총상으로, 나머지 9불을 별상으로 삼고 10세에서는 9세를 별상으로, 그 9세가 상즉상입하여 이루는 일념을 총상으로 삼는다. 만약 앞에서 살펴 본 의상-법장 특유의 총별 구조라면 10불과 10세가 총상이 되고 그에 포섭되는 제1불부터 제10불, 9세와 1념이 모두 별상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④의 10세를 육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의상(①)에게도 동일하

11)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45, p.506下19-22), “言十世者. 過去未來現在三世, 各有過去未來及現在, 即爲九世也. 然此九世, 迭相即入故, 成一總句. 總別合成十世也. 此十世具足別異, 同時顯現成緣起故, 得即入也.”

12)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35, pp.436下11-437上3), “初一安住世間者, 示於涅槃無著也. 成正覺者, 示於世間無著. 故名無著佛. ……此是總句, 下九別顯. ……此中十佛, 六相總別等准之.”

게 보이며 이러한 설은 지엄의 설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¹³⁾ ⑤의 경우는 원효의 설(㉔㉕)과 관련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⑤는 법장이 십불을 총별의 육상을 통해서 풀이하는 구절이다. 십불을 육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엄과 의상의 현존 문헌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효의 설로 인용되는 구절¹⁴⁾에는 법장과 똑같은 총별의 구조로 십불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는 십불설이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10구이므로 원효와 법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육상설을 이용하여 풀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법장이 원효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원효의 육상설을 이용한 십불 해석이 법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효의 육상설은 현존하지 않는 원효의 『화엄경소』에 설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장이 『화엄경탐현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원효의 『화엄경소』를 참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가능성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법장의 총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장은 『십지경론』 이래의 전통적인 총별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의상에 의해서 새롭게 고안된 총별 구조 또한 적극 수용한다. 법장의 문헌 전체적으로 본다면 횡수나 비중의 측면에서 의상이 개변한 총별 구조를 더욱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장이 자신의 육상설을 본격적으로 천명한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의 육상원용의에서 의상의 총별 구조를 바탕으로 집의 예를 통해서 자신의 육상설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총별 구조에 대한 법장의 이중적인 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상의 태도와 완전히 동일하다. 의상 또한 자신 고유의 총별 구조와 함께 특히 10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총별 구조를 공존시키고 있다. 결국 총별 구조에 한해서는 의상과 법장은 동일한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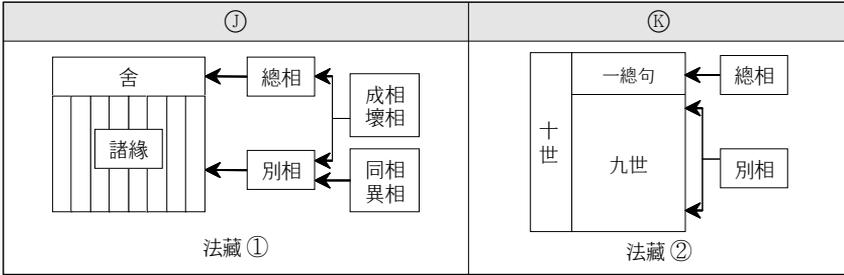
법장의 육상설 가운데 동이성괴의 경우, 동이는 별상의 각 항목에 대한 동이

13) 智儼, 『華嚴五十要問答』(『大正藏』45, p.528中17-21) 참조.

14) 壽靈, 『華嚴五教章指事』(『大正藏』72, p.252中5-下1).

이고 성괴는 총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는 지론종의 법상(㉔)에 의해 변용된 이래 원효(㉑)와 의상(㉒)에게도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법장의 육상설 구조를 보면 두 가지 형태(㉑㉒) 모두 의상의 구조(㉒㉑)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별동이성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법장은 그의 스승 지엄보다는 의상의 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총별의 구조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법장은 왜 육상설의 시초인 세친부터 그의 스승인 지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의상이 처음 도입한 총별의 구조를 따른 것일까? 물론 법장 자신이 밝히지 않았으므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법장이 새로운 총별의 구조를 받아들인 것은 의상과 마찬가지로¹⁵⁾ 육상설을 조건 없이, 이법과 사법의 구분 없이 상즉상입으로 대표되는 일승의 연기를 설명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절을 달리하여 논한다.

15) 박보람, 앞의 논문 「원효와 의상의 만남과 헤어짐 - 육상설(六相說)을 중심으로」, IV. 의상 참조.

III. 육상설의 목적과 적용 대상

1. 목적에 따른 사법 제외와 조건적 폐지

『십지경』 초지 제 4대 서원에 보살행의 방법 내지는 방편으로 등장하는 총별동이성귀를 세친이 육상설로 해석하면서 이를 경전 해석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미 수많은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이다. 즉 총별동이성귀가 육상설로서 다시 태어나는 『십지경론』에서 육상설의 목적은 “여섯 종류의 차별상”으로 이루어진 언설 해석 방법을 통해서 경전의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지경론』은 육상설 각 항목의 정의를 비롯한 이론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이론을 10구로 이루어진 『십지경』의 여러 구절에도 실제로 적용한다. 보살의 10입을 육상으로 풀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 세친은 경전 해석 방법인 육상설의 적용 대상에서 사법, 즉 오온·십이처·십팔계는 제외한다고 명언한다.¹⁶⁾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이 ‘사법’을 보살행, 교법 등을 아우르는 ‘이법’(理法)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상의 『십지경론의소』, S4303, S613 등의 지론종 문헌이 육상설을 이법과 교법과 행법의 체계에만 적용시키며¹⁷⁾ 지엄이 육상설의 적용 대상을 설명하면서 이법과 사법 중에서 육상설이 이법에 수순하는 뜻이 현저하다는 논의¹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석가모니 붓다 이래 온·처·계의 삼과법(三科法)은 일체법을 가리킨다. 세친이 지은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서도 “일체법을 전체적으로 포섭함은 하나의 온과 처와 계에 의하는 것”¹⁹⁾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따른다면 온·처·계인 사법은

16) 世親, 『十地經論』(『大正藏』26, p.125上1), “應知除事, 事者謂陰界入等.”

17) 박보람, 앞의 논문 「육상설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 『십지경』부터 지론종까지를 대상으로」, III.1.~3. 참조.

18) 智嚴,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大正藏』35, p.66中9-18) 참조.

19) 권오민 역, 『아비달마구사론 1』(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2002), p.32; 世親, 『阿毘達磨俱舍論』「分別界品」(『大正藏』29, p.4中17), “總攝一切法, 由一蘊處界.”

일체법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다면 일체법을 제외하고 육상설을 어디에 적용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교법(경전에 설해지는 10구)과 행법(보살행)과 이법은 오오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몰라도, 또 견해에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이야 다를 수 있지만 유위법과 무위법을 포괄하는 십이처와 십팔계에는 포섭될 수 밖에 없다. 세친이 육상설을 설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사법을 제외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사법에 대한 세친의 설명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상설을 적용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²⁰⁾ 세친의 이 언설에는 사법과 제법의 포섭 관계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불명료함이 심겨져 있다.

사법 제외 폐지를 위한 첫 발걸음은 널리 알려진 대로 정영사 혜원이 내디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²¹⁾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와 관련하여 혜원이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걸은 조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만 주목하고자 한다.

⑥ 이 육[상]은 곧 모든 법의 체의(體義)이다. 이 체의는 허통하여 취지가 [어디에도] 있지 않음이 없다. 뜻이 비록 변재하여도 사법은 격별하여 이 [육상이] 없다. 이래서 『십지경론』이 일체 10구는 모두 육상이 있지만 사법은 제하니 사법은 음·계·입 등을 일컫는다고 설한다. 음·계·입 등은 저것과 이것이 서로 바라보면 사법이 달라서 떨어져 장애가 있어 이 육상을 갖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법을] 제외한 것이다. 만약 사상을 섭수하여 체의를 따른다면 음·계·입 등의 하나하나 [사법]에 모두 한량 없이는 육상문을 갖춘다.²²⁾

20) 『십지경론』에 대한 동아시아의 여러 주석서들은 이상하리만치 이 문제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계도기총수록』 「법용기」는 이 구절에 대한 세 가지 풀이를 제시한다. 그 가운데 의상의 제 3세손인 신림(神琳, 8세기경 활동)과 대승경공간의 문답이 소개되는데 대승경공은 이러한 난점을 언급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답한다. 즉 이 구절의 난점에 대해서 당시의 신라 화엄계에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 미상, 해주 옮김, 『법계도기총수록』(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p.308-309 참조.

21) 대표적으로 木村清孝, 『初期中国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77), p.312-313; 전호련, 『華嚴 六相說研究 I』, 『불교학보』 제31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I. 3. 六相의 範疇 참조.

22) 慧遠, 『大乘義章』(『大正藏』44, p.524上6-11), “此六乃是諸法體義, 體義虛通, 旨無不在. 義雖遍在, 事隔無

⑥을 보면 혜원이 사법에 육상을 적용할 때의 맥락은 사법은 서로 격별(隔別)하여 육상의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事相)을 포섭하여 체의(體義)를 따른다면 육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측면에서 음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혜원 또한 교법·행법·이법과 음·계·입의 사법 사이에 육상설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굳이 사법의 체의(體義)를 따른다는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사법에 육상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육상설이 적용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보면 혜원은 절대 사법 그 자체에 육상설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사상(事相)의 체와 사상의 의를 가지고 육상설을 적용한다. 즉 색음이 고·무상·부정·허가·공·무아(苦無常不淨虛假空無我) 등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체는 동일하여 하나의 색음을 이루어 총상이고 동체이지만 고·무상 등의 여러 뜻은 서로 다르므로 이상이라는 것이다. 즉 나중에 살펴볼 법장의 경우처럼 집과 서까래, 즉 사법 사이의 육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이 갖춘 체의를 통해서 육상설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원의 설은 사법 제외 무력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냉정히 판단한다면 사법 제외의 무력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혜원이 사법 제외 무력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혜원의 무력화는 직접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직접적, 무제한적인 사법 제외의 폐지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의상과 법장에 이르러서야 완성된다.

2. 사법 제외의 무조건적 폐지와 그 목적

법장은 육상설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언급한다.

之.是以論言,一切十句,皆有六相,除事,事謂陰界入等.陰界入等,彼此相望,事別隔礙,不具斯六,所以除之.若攝事相以從體義,陰界入等一一之中,皆具無量六相門也.”

⑥ 두 번째, [육상의] 가르침이 일어난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가르침은 일승원교의 법계연기가 다함 없이 원용하여 자재롭게 상즉하며 장애 없이 용융하고 내지 인다라[망의 경계]이며 끝없는 이사 등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²³⁾

⑦ 첫 번째, [육상의] 가르침이 일어난 뜻은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고정적으로 집착하는 견해를 무너뜨려서 연기원용의 법을 드러내는 것이다.²⁴⁾

⑥은 법장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의리분제장」에서 육상원용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가운데 두 번째 육상의 가르침이 일어난 목적을 직접 밝히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필자의 능력으로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다만 법장에게 육상설의 목적은 경전 해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을 포함한 더욱 근본적인 목적은 일승원교의 법계연기의 실상, 즉 무진원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화엄경탐현기』에서 육상의를 밝히는 구절의 일부분인 ⑦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법장에게 육상설이 일승원교의 법계연기가 무진원용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육상설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⑧ 세 번째, [육상의를] 문답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육상의는] 연기법 일체의 경우에 통한다. 지금은 우선 연으로 이루어진 집을 간략히 대상으로 하여 [육상의를 문답으로] 변별한다.²⁵⁾

⑨ 일체 제법은 모두 이 육상을 갖추어야 연기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만약 이와 같이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육[상]의 뜻을 잃는다.²⁶⁾

23)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45, p.507下10-12), “第二教興意者。此教爲顯一乘圓教法界緣起無盡圓融自在相即無礙鎔融乃至因陀羅無窮理事等。”

24)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35, p.282上21-22), “一明教興意。謂破定執見以顯緣起圓融之法。”

25)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45, p.507下19-20), “第三問答解釋者。然緣起法一切處通。今且略就緣成舍辨。”*就緣’이 大正藏本의 甲本에는 ‘據緣起’로, 乙本과 丙本에는 ‘據緣’으로 되어 있다.

26) 法藏,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45, p.632中27-28), “一切諸法。皆具此六相。緣起方成。若不如此。則失六義也。”

⑧은 앞의 ⑥에, ⑨는 앞의 ⑤에 이어지는 구절이다. 내용을 보면 육상설이 일체 연기법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즉 이법과 사법을 가리지 않고 ‘일체 제법’이 육상을 갖추어야만 연기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첫 번째는 ⑧에서 집을 거론하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에 이 문답에서 육상설을 적용하는 대상인 집을 ‘비유’로서 이해하지만 이 문구는 정확하게 ‘비유’가 아니라 ‘실례’ 또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문의 ‘就’ 또는 다른 본에 의하면 ‘據’는 통상 예를 거론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비유를 들 때 쓰는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법장의 집을 통한 육상설 문답은 실제 사례에 대한 문답으로서 비유를 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육상설이 일체 연기법에 적용된다는 주장을 통해서 세친의 사법 적용 제의를 폐지하였는데 그 방식이 혜원과 같이 우회적, 제한적이 아니라 직접적, 무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법장은 인용문에서 보이듯 육상설을 사법에 적용함에 있어서 사법의 체의에 따른다는 등의 어떠한 우회적, 제한적 조건 없이 그냥 사법 그 자체에 바로 육상설을 적용한다. 즉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집도 연성(緣成)이므로 법장에 의하면 당연히 육상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집과 서까래의 체의를 빌려서 육상설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내용을 앞서 언급한 육상설의 목적과 함께 고려하면 법장이 사법 제의를 왜 폐지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즉 육상설이 연기법의 무진원용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육상설은 연기법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서라면 육상설의 적용 대상은 연기법 전체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혜원처럼 육상설을 사법의 체의(體義)에 적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법 그 자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법장의 육상설이 일승연기의 무진원용을 밝히려는 목적과 그에 따라서 일체 연기법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를 특징으로 한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총별 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총별 구조는 본래 경전에 설해지는 10구를 해석,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따라

서 10구 중 제 1구를 총으로 하고 나머지 9구를 별로 하여 그 관계를 동이성피로 다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장과 같이 욕상설을 연기법의 원용의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사법을 포함한 일체 연기법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종래의 총별 구조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을 욕상설로 설명할 경우 종래의 구조라면 총상을 집이 아닌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규정해야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서까래를 총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별상으로 한다면 법장이 의도하는 연기의 원용의에 오히려 위배되고 말 것이다. 집을 욕상설로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총별 구조를 변화시켜서 집 자체를 총상으로,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원용의를 밝히는 것이 사법을 다루는데는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총별 구조의 변화는 의상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렇다면 연기법의 무진원용의를 밝히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사법제외를 폐지한 법장의 욕상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법장독자의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의상의 욕상설이 주목된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⑩ [문] 욕상은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답] 연기의 무분별한 도리를 바로 나타내기 위한 까닭이다.²⁷⁾

⑪ 이제 우선 도인의 모습에 근거하여 욕상을 밝혀서 일승과 삼승이 주(主)와 반(伴)을 서로 이루어 법을 드러내는 분제를 보인다.……모든 연緣으로 생겨난 법이 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²⁸⁾

⑩과 ⑪은 모두 의상의 『일승법계도』 중 일부이다. ⑩에서 의상은 아주 단순명료하게 주장한다. 자신의 욕상설은 연기법의 이치를 밝히기 위한 것이

27)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6, p.792下4-5), “問. 六相者, 爲現何義? 答. 正現緣起無分別理故.” * 『일승법계도』 원문은 『법계도기총수록』 수록본을 사용하며 그 한글역은 저자 미상, 해주 옮김, 『법계도기총수록』(동국대학교출판부, 2014)를 수정하여 인용한다. 이하 동일.

28)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6, p.791下6-16), “今且約印像, 以明六相, 示一乘三乘主伴相成現法分齊.……一切緣生法, 無不六相成也.”

라고. 이는 세친 이래의 육상설의 목적과는 그 궤를 달리하며 법장의 목적과 기본적으로 같다. 또 ㉠을 보면 의상의 육상설은 모든 연기법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도 세친 이래의 전통에서 벗어났으며 동시에 정영사 혜원의 방향, 즉 육상설의 제한적인 사법 적용과도 같지 않다. 이러한 의상의 육상설 적용 범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장의 육상설 적용 범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육상설을 통해서 연기설을 규명하려는 목적과 이에 따라서 사법 적용 제외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폐지하려는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의 육상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장 육상설에 대한 의상의 영향을 단정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엄이다. 의상과 법장 둘 다 지엄의 문하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육상설이 모두 지엄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는 일승연기의 무진원용의를 밝히려는 목적과 이를 위해 사법 제외를 폐지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구축된 법장의 육상설이 지엄에게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한다.²⁹⁾ 그러나 필자가 지엄의 현존 저술에서 육상 관련 논의를 검토한 결과, 물론 필자의 노력이 불충분해서일 수 있지만, 지엄이 법장 육상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의상과 법장의 육상설에서 보이는, 기존의 육상설과 다른 특징은 앞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일승연기의 해명이라는 목적과 이에 따른 육상설의 전면적 사법 적용이다. 따라서 지엄이 의상과 법장의 육상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의상과 법장의 육상설에 보이는 목적과 적용 범주의 두 가지 특징이 지엄의 저술에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엄의 육상설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은 명확하지 않다. 첫째, 지엄의 육상설에 관한 선행 연구³⁰⁾가 보여주듯이 목적과 관련하여 지엄의 현존 저술에는 육상설의 목적과 관련하여 명확한 언급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9) 石井公成, 앞의 책, p.224, p.302; 오다 겐유(織田顯祐), 앞의 논문, p.488 참조. 이 두 연구에서는 지엄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다지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30) 박보람, 앞의 논문 「원효와 의상의 만남과 헤어짐 - 육상설(六相論)을 중심으로」, II.2. 지엄 참조.

부정도 긍정도 현재로서는 힘들다. 둘째, 적용 범주에 대해서 지엄의 현존 저술에는 육상설을 연기법, 예를 들어 의상의 도인이나 법장의 집과 같이 구체적인 사법에 적용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엄은 인(因)의 6의(義)와 육상을 같이 논하면서 인의 6의는 사법에 수순하는 뜻이 더하고 육상은 이법에 수순하는 뜻이 더하다고 하여 육상설을 사법으로부터 더욱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³¹⁾ 셋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육상설을 전면적으로 사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별의 구조를 종래의 것에서 의상과 법장의 구조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수월하다. 그러나 지엄(㉔㉕)에게는 이러한 총별 구조가 보이지 않고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만 보인다.³²⁾

이상을 종합하면 일승연기의 무진원용의를 밝히려는 목적과 이에 따른 사법 적용 제외의 폐지를 특징으로 하는 법장의 ‘육상원용의’는 지엄보다는 의상의 육상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장의 육상원용의는 의상의 육상설을 단지 답습한 것일 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 육상설의 모조품이 아니라 의상 육상설을 모델로 하여 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논하고자 한다.

3. 원용의를 통해 본 법장 육상설의 특징

의상의 육상설은 목적, 적용 범주, 그리고 그에 따른 총별 구조의 측면에서 이전의 육상설에게 안정을 고하고 일승의 대연기다라니법(大緣起陁羅尼法)³³⁾

31) 智儼,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大正藏』35, p.66中9-18), “若爾, 六義不應總別相成。答。六義六相共成者。六相有二義。一順理, 二順事。此二義中, 順理義顯, 順事義微。其四緣事二義同上, 但順事義增, 順理義微。所以知。因緣生果法, 起迷義顯, 爲此論主別將六相照令入理故, 知四緣順事增也。所以知。總別順理義增者, 爲辨六相令見心入理。問。何以得知但總別六義得順理增不取於事? 答。論主簡事不具六相, 唯約義辨, 故知也。”

32) 이와 관련하여 지엄이 육상의 뜻을 중히 여기라는 말을 듣고 이를 궁구하여 깨달음을 얻어 『수현기』를 지었다는 법장의 기록에 대해서 필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엄의 현존 저술에는 의상과 법장만큼 육상설을 중시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육상설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저술되었다는 『수현기』에는 육상설의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논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이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환골탈태한 것이며 법장의 육상설도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바이다. 동시에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의 육상설과는 다른, 어쩌면 더욱 진화된 측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육상설에서 ‘원용’의 뜻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법장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의리분제장」 육상원용의 제3 문답해석³⁴⁾에서 육상의 원용의를 집중적으로 밝힌다. 여기에서 법장은 총별, 동이, 성괴 사이의 원용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법장은 연성의 집을 실례로 들어서 총이면 곧 별이고, 별이어야만 곧 총이며, 나아가 별이 곧 총이라는 원용의를 설한다. 즉 별상인 서까래가 곧 총상인 집이라는 것이다. 의상도 총상(일승)과 별상(삼승)의 주반상성(主伴相成)을 얘기하지만³⁵⁾ 법장이 문답에서 펼치는 원용의와 같이 서까래가 곧 집이라고 하는 더욱 적극적이고 정치한 교리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동상과 이상, 성상과 괴상의 원용의에도 계속된다. 즉 의상에게서는 아직 동상과 이상의 관계, 즉 원용의에 대해서 인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현존하는 저술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장이 이 쌍의 원용의에 대해서 동상이어야만 이상이고 이상이어야만 동상이라는 방식의 원용의를 집을 예로 든 문답을 통해서 자세히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상의 육상설의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의상이 육상설의 씨앗에서 육상연기의 싹을 틔웠다고 한다면 법장은 그 싹에서 육상원용의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6, p.830上24).

34)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45, pp.507下19-508下22). 해당 구절이 너무 긴 관계로 본문과 해석은 생략한다.

35)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6, pp.791下16-792上2), “所謂揔相者, 義當圓教, 別相者, 義當三乘教. 如揔相別相成相壞相等, 不即不離, 不一不異, 常在中道, 一乘三乘, 亦復如是, 主伴相資, 不即不離, 不一不異. 雖利益衆生, 而唯在中道, 主伴相成, 現法如是.”

IV. 결론

화엄종의 대성자(大成者)라고 불리는 법장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의리분제장」에서 육상원용의를 제창한 이래 육상설은 화엄종에서 일승연기의 무진원용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한 교리적 방편이 되었고 이 때의 육상설은 대부분 법장의 육상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처럼 화엄종,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장의 육상설은 그 자체가 총별동이성괴의 육상설로 고찰해야 할 하나의 연기법이다. 즉 법장의 육상설은 홀로 고립된 자성법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생겨난 교설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장의 육상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육상설의 궤적을 따라가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육상설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육상설 각 항목의 내적 구조와 육상설의 목적, 그리고 적용 범주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세친의 『십지경론』에서 설해지는 육상설로부터 지엄, 의상에 이르기까지의 육상설을 개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장의 육상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법장의 육상설은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 육상설의 목적이 경전 해석 방법으로 대표된다면 법장 육상설은 일승연기의 무진원용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세친이 육상설의 적용 범주에서 사법을 제외한 것을 지론종의 정영사 혜원은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걸고 사법의 체의(體義)에 의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장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전면적인, 무제한적인 육상설의 사법 적용을 주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법장 육상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셋째, 육상설을 전면적으로 사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장은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사법인 집 자체를 총상에, 집을 구성하는 요소를 별상에 배대하는 변화된 총별 구조를 논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 법장의 육상설은 검토 결과 그의 스승 지엄보다는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상의 육상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지엄까지는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에 포함되고 의상과 법장 부터는 새로운 육상설의 흐름이 시작되어 이것이 그 이후 화엄종의 육상설을 대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의 육상설과 비교할 때 차이점도 가진다. 즉 총별·동이·성괴 사이의 원용의가 의상에게는 아직 부각되지 않지만 법장에게는 예를 들어 별상인 서까래가 곧 총상인 집이며 또 서까래여야만 곧 집이라는 원용의가 극도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상과는 또 다른 법장 육상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자료

- 『大正藏』 大正新脩大藏經(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24~1932)
- 『韓佛全』 韓國佛教全書(서울: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1979~)

- 世親, 『十地經論』(『大正藏』 26)
- 世親, 『阿毘達磨俱舍論』「分別界品」(『大正藏』 29)
- 智儼,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大正藏』 35)
-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 35)
- 慧遠, 『大乘義章』(『大正藏』 44)
- 智儼, 『華嚴五十要問答』(『大正藏』 45)
-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 45)
- 法藏,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 45)
- 壽靈, 『華嚴五教章指事』(『大正藏』 72)

-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 6)

2. 2차 자료

<단행본>

- 권오민 역, 『아비말마구사론 1』,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2002.
- 金苐石, 『華嚴學概論』, 서울: 법륜사, 1986.
- 본각, 『화엄교학 강론』, 서울: 뜨란, 2018.
- 해주, 『화엄의 세계』, 서울: 민족사, 2000.
- 저자 미상, 해주 옮김, 『법계도기총수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96.
- 木村清孝, 『初期中国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77.

- 金天鶴, 『平安期華嚴思想の研究—東アジア華嚴思想の視座より—』, 東京: 山喜房佛書林, 2017.

<논문>

- 박보람, 「육상설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 『십지경』부터 지론종까지를 대상으로, 『불교학연구』 47집,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III.1.~3.
- _____, 「원효와 의상의 만남과 헤어짐 - 육상설(六相說)을 중심으로」, 『불교철학』 제5호, 서울: 세계불교학연구소, 2019, IV. 의상.
- 오다 겐유(織田顕祐), 「『십지경론(十地經論)』의 육상설(六相說)과 지엄(智嚴)의 • 연기사상-지론(地論)에서 화엄(華嚴)으로-」,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 p.488.
- 전호련, 「華嚴 六相說 研究 I」, 『불교학보』 제31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I.3. 六相의 範疇.

New Understanding of Fazang's Theory on the Six Characteristics

Park, Bora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ince Fazang (法藏), Great Founder of the Huayan School, had advocated the Theory of the Six Characteristics (the Theory, hereafter) in *Huayan yisheng jiao fenqi zhang* (華嚴一乘教義分齊章), the Theory became the basic doctrine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perfect interfusion in conditional arising and the Theory was always based on the Fazang's theory.

To figure out Fazang's theory of the Six Characteristics, we have to look into the former theories than Fazang'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ix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e Theor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Fazang's theory has three differenc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heories since Vasubandhu's theory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Fazang's theor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perfect interfusion in conditional a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ne vehicle doctrine. Second, Fazang insists on the full and unlimited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any conditional arising dharmas without any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apply the Theory to conditional arising dharmas without any conditions, Fazang changed the structur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總相) and parts (別相).

Fazang's theory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his senior, Uisang (義相) than by his teacher, Zhiyan (智儼). This means that theories up to Zhiyan are included in the traditional theory originated from Vasubandhu, and from Uisang

and Fazang a new theory begins, which has represented the Theory of the Huayan school since then.

Fazang's theory also differs from that of Uisang. The meaning of perfect interfusion is not yet highlighted in Uisang while extremely emphasized in Fazang.

Keywords

Fazang, Zhiyan, Uisang, the Six characteristics, perfect interfusion, Vasubandhu, *Daśabhūmika-sūtra-śāstra*

2019년 11월 15일 투고

2019년 12월 14일 심사완료

2019년 12월 16일 게재확정

